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0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송옥주 · 김현정 · 황명선
임미애 · 문대림 · 문정복
이소영 · 이개호 · 이원택
윤준병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 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 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2호의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동영농”이란 여러 농업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공동적,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방식을 말한다.

10.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공동영농”이란 여러 농업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공동적,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방식을 말한다. 10.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10. (생략)

③ · ④ (생략)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
·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 친
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
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

[illegible]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u>
3. ~ 7. (생략) ②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